

# 대학원 환경자원경제학과 운영 내규

1. 기존 학과 내규가 없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.
2. 아래 내용 중 빨간색 내용은 필수로 정하여야 하며, 그 외 사항은 학과의 사정에 따라 달리하여 작성. 단, 석사학위 논문대체를 시행하는 학과에서는 제16조와 제17조를 필수로 정하여야 함
3. 기존 학과 내규가 있는 학과에서는 2번을 반영하여 작성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환경자원경제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**제2조 (적용범위와 효력)**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환경자원경제학과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,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

## 제2장 입학관리

**제3조 (우수학생의 유치)** 환경자원경제학과 소속 교수들은 환경자원경제학과 석·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.

## 제3장 교육과정 및 교·강사 배정

제4조 (교육과정)

제5조 (과목개설)

제6조 (교·강사 배정)

## 제4장 논문지도

### 제7조 (지도교수의 선정)

## 제5장 자격시험

### 제8조 (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)

제 1항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대학원 재학 중 공인된 학술지 (한국연구재단등재 학술지 및 외국 학술지)에 우리 학과 전공과 관련된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논문 제출자격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.

제 2항 논문제출자격시험의 대체 요건은 주 저자 논문을 기준으로 석사과정은 1편 이상, 박사과정은 2편 이상으로 한다.

제 3항 공동논문일 경우에는 단국대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환산한다.

제 4항 이 조항에 따른 논문제출자격시험의 대체에 대한 최종승인 여부는 학과 운영위원회 결정방식에 따른다.

### 제9조 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)

제 1항 (종합학력시험 과목 수)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,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이다.

제 2항 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) 학과 전임 교원 당 1과목 출·채점,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이다.

※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음. 단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

### 제10조 (외국어시험 과목)

제 1항 (공인어학시험) 내국인 학생의 경우 영어성적만으로 면제를 하며,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 성적 또는 영어 성적(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학생)으로만 면제한다.

제 2항 해외 수학(연수) 국가 내국인 학생의 경우 영어권 국가에서 수학(연수)시에만 면제,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 또는 영어권국가(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)에서 수학(연수)시에만 면제 가능하다.

## 제6장 학위과정

### 제11조 (석사학위 과정 선택)

제 1항 (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)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요건으로 학위논문 작성, 학위 작품 제작·발표, 연구논문 작성이 있다.

제 2항 (석사학위 과정 선택) 환경자원경제학과에서는 학위논문작성만을 석사학위 과정으로 인정한다.

##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### 제13조 (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)

### 제14조 (예비발표)

### 제15조 (논문심사위원)

### 제16조 (논문대체 심사절차)

### 제17조 (논문대체 제출)

##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

**제18조 (의사결정 방식)**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임교수 2/3의 참석(위임 포함)과 2/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